



# 한국원자력학회

우)34166 대전시 유성구 유성대로 794(장대동 342-1, 뉴토피아빌딩 4층)  
전화 042) 826-2613 전송 042) 826-2617 담당 : 이연화  
<http://www.kns.org> E-Mail : [news@kns.org](mailto:news@kns.org)

한원회 제2024-1호

시행일자 : 2024.1.4.

수 신 : 정회원, 정회원(대학원생), 학생회원

참 조 :

제 목 : 2024년도 회비납부 안내

1. 회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하며, 우리 학회의 발전과 건전한 운영을 위해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신 것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우리 학회에는 6,400여 회원님과 63개 특별회원의 지원에 힘입어 각종 학회 활동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 왔으며, 금년도 원자력발전을 위한 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리 학회의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3. 우리 학회 정관 시행세칙 제3조 (회비 등) 2항에 따라 연회비는 매년 5월 말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후 당해연도 연회비를 납부하기 전까지 회원의 권리를 제한함 (2020.10.21. 개정))

- 아 래 -

## 가. 회비종류 및 금액

구 분	회 비	비 고
정회원	50,000원	단, 대학원 재학생 2만원
평생회비	500,000원	정회원 중 연회비 10년분을 일시납 할 시 연회비 면제
만 65세를 초과한 회원	면제	
학생회원(학부생)	5,000원	

## 나. 납부기한 : 2024년 5월 31일

다. 납부방법 : 신용카드, 실시간계좌이체, 가상계좌 중 선택

- 홈페이지([www.kns.org](http://www.kns.org)) 회원라운지-마이페이지-회비결제

<참고사항> 정관 시행세칙 중 회비 납부 시기 및 회원의 권리에 대한 조문

제3조 (회비 등)

②연회비는 매년 5월말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이후 당해연도 연회비를 납부하기 전까지 회원의 권리를 제한한다. (2020. 10. 21 개정)

③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정회원은 춘/추계학술발표회 등록 시 회원가 적용을 받을 수 없다. (2019. 10. 24. 신설)

제11조의 3 (선출직 평의원의 선출) (2019. 10. 24. 신설)

① 평의원은 선출 해당 연도의 연회비를 납부한 정회원이어야 한다.

② 직선평의원 투표권은 선출 해당 연도의 연회비를 납부한 정회원에게 부여한다.

제11조의 4 (임원의 선출) (2019. 10. 24. 신설)

① 임원은 선출 해당 연도의 연회비를 납부한 정회원이어야 한다.

② 임원 선출 투표권은 선출 해당 연도의 연회비를 납부한 평의원에게 부여한다.

사단법인 한국원자력학회

